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6급(고졸) 공채 FAQ

I 채용공고관련

☐ 채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6급의 경우 24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합니다. 세부 모집분야별 인원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이후 신분과 보수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신입직원 공채는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약 4개월 인턴신분동안은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턴기간동안 월 급여는 세전 총액 256만원이며, 정규직 전환 후 보수수준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하면 정규직 전환은 언제 하나요?

⇒ 교육기간 및 실무 인턴기간(약 4개월) 종료 후 교육 및 인턴과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기준 미흡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세부 전환기준 및 일정은 별도 전환계획에 따르며, 채용형 인턴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내 근무자(기간제포함)여도 지원가능한가요?

⇒ 네,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붙임 1]**)에 해당되거나, 모집분야 또는 5급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6급(고졸)공채와 5급공채에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확인됐을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모집분야’ 가 무슨 의미 인가요?

⇒ ‘모집분야’란 채용공고문 ‘1.모집분야 및 선발인원’에 인원이 표기된 각각의 모집단위를 의미합니다. “행정”, “건축” 등이 각각의 모집분야입니다.

구분			NCS기반 직무설명서	일반채용	사회형평채용 보훈
사무직	행정		직무설명서	8	1
기술직	토목군	토목	직무설명서	6	모집분야 1
	건축군	건축	직무설명서	2	
		기계	직무설명서	2	
		전기	직무설명서	2	

□ 모집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 네, 모집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보훈·장애인 전형 등은 별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모집분야간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됐을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도 지원 가능한가요?**

⇒ 이번 6급(고졸)공채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인문계, 특성화고, 특목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7. 2월까지 졸업예정인 사람 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부 인가 대안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하지만 미인가 대안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6급(고졸)공채에 지원 가능한 고졸자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27.2 졸업예정)이거나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 검정고시 합격자나 대학중퇴자, 대학 재학 및 휴학자도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이상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예) 1. 최종학력이 중학교인 자 → 지원불가
2. 최종학력이 고졸에 준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가능
3.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인자 중 1학년부터 졸업학년 1학기 재학 또는 졸업학년 1학기 휴학, 중퇴, 제적자 → 지원가능
4. 대학(전문대포함) 졸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 지원가능
5.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6. 졸업유예, 졸업유보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7. 사회봉사학점, 어학성적 등 별도 수업 외 졸업자격 미달로 인한 대학 (전문대포함)미졸업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 **대학 재학 중 6급 공채에 합격한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나요?**

⇒ 업무시간 중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학업의 지속은 가능합니다.

□ 연령, 학력, 내신등급 제한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 연령, 내신등급에 제한없이 입사지원하실 수 있으나 학력은 6급(고졸) 공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졸이상(공고일 기준 졸업년도 2학기 재학이상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군 미필자, 군 복무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6급(고졸)공채의 경우, 병역을 기피하지만 않았다면 병역미필자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군 복무중인 경우 인턴 근무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26.12.27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응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입사 이후 군 입대를 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NCS기반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한 교육, 경력, 경험 등이 많이 부족한데 지원자격 미달인가요?

⇒ 직무설명서에 기술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과 기본적인 직무수행역량을 전형절차에서 검증하며 교육, 경력, 경험의 유무가 지원을 제한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 채용목표제란 무엇인가요?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공사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본사 이전지역인재, 지역균형인재, 양성평등 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채용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방법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목표비율

구 분	이전지역인재	지역균형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비율	30%	35%	30%

□ 이전지역인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본사 이전지역(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르며,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이전지역인재 해당 여부를만 표시하게 되며, 오류·허위입력으로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 5]**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균형인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지역균형인재는 학위과정 유형(학사, 석사, 박사)을 불문하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여 탁월·우수·성실 인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공채에 지원하려 하는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탁월·우수·성실 청년인턴에 대하여 서류전형 등 우대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LH에서 해당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3]**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만, 탁월·우수·성실인턴이 아님에도 허위로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우대사항)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산점(우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3]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가산점 대상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 가산점은 특별우대, 일반우대(자격증, 수상경력), 청년인턴 분야별로 가장 유리한 1개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대상자와 이전지역인재가 동시에 해당되더라도 유리한 1가지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산점 목록 및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붙임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관련 증빙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채용공고문을 참고)

만일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형에서 통과할 경우 타인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허위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공사에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이나 제출서류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 스캔본, 사본 등 서류 제출해주시면 되고, 원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지해 주시나요?

⇒ 전형별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합격/불합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II 전형절차 관련

☐ LH의 NCS기반 채용 적용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공사는 아래와 같이 NCS기반 채용을 적용합니다.

구 분	적용수준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 모집분야별 NCS기반 직무설명서 공지 ○ 직무요건을 반영한 입사지원서
서류전형	○ 불필요한 스펙 평가 배제
필기전형	○ 직무능력검사 (NCS 직업기초능력)
면접전형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구조화 면접

☐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서류전형은 어학점수 10%, 자격증 등 평가 90% 계량평가로 이루어지며, 그 외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30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각 항목별로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점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등 평가기준에서 사무분야의 경우 국어능력인증 등 자격이 명시되어있는 등급 이상이면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 맞습니다. 명시되어있는 등급 이상이면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어능력인증 등 자격이 없더라도 기본점수 40%가 부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등 평가기준에서 기술분야의 경우 기능사 자격만 보유해도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기술분야 관련 기능사 자격만 보유하더라도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4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세한 자격증 목록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별 모집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전형은 30배수 내외로 선발하고 필기전형에서는 2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면접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훈 및 장애인 전형 지원자는 필기전형 합격자 선발시 일반전형의 2배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발인원	구분	2명이하	3~4명	5명이상
합격자 선정배수	일반전형	4배수	2.5배수(반올림)	2배수
	보훈/장애인전형	8배수	5배수	4배수

□ **필기시험이 서울, 대전, 진주에서 실시되는데 시험장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 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시험장소별 수용인원 한도가 있어 부득이 선택한 시험장소에서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장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선(先) 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원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지역과 다른 시험장소에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직무능력검사에 전공과목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직무수행역량을 검증하는 만큼 직무관련 요소가 시험문항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공적 요소를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직무에 유불리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측정(평가)영역은 무엇인가요?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출제될 예정이며, 기타영역을 연계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안전관련 분야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전형 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40문항 60분이 소요됩니다.

□ 필기전형 합격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작성하며 문항은 합격 발표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명, 출신학교, 학력, 출신지 등을 기재하거나 특정인임을 드러내는 정보를 기재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4]**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응시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 인성검사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시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성검사 결과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다만, 인성검사는 필수절차로서 정해진 기한내 미응시한 경우 면접전형 등 이후 채용전형에 응시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검증 등이 이뤄짐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 직무역량종합면접으로 동일한 면접실에서 집단발표면접 및 개별 역량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단발표면접은 직무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원들과 발표자료 작성하여 발표하는 면접이며, 개별역량면접은 필기전형 이후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결과지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면접일정 및 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면접전형 대상자 안내시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별 점수가 다음 전형에 반영되나요?

⇒ 서류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은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됩니다.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의 비율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 선발시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면접전형 점수(가산점 제외) > 필기전형 점수(가산점 제외)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필기전형 점수까지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나요?

⇒ 네. 공사는 합격 후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운영합니다.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탈락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예정인원의 50%내외(소수점 반올림하되 모집분야별 1명 이상 배정, 과락 제외)를 선발합니다. 다만, 보훈 및 장애인 전형 지원자는 예비합격자 선발시 일반전형의 2배로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합격자	일반채용	보훈/장애 채용	비고
	50%(소수점 반올림)	100%	최소 1인 선발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27.2.17(수) 16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아울러 기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따라 이취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득점점수는 공개하나요?

⇒ 필기전형 점수와 지원분야 커트라인은 합격자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며, 면접전형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전형 불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역량진단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 역량진단 보고서는 최종탈락자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합격자 대비 필기전형 점수 수준, 면접전형 세부 평가항목별 백분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채용서류를 반환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합격자발표 시에 채용서류 반환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제출하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6급(고졸)공채 입사자의 입사 후 승진제도는?

⇒ 정규직 임용 및 근무 6년 후 승진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승진 관련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 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하게 되면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 최종합격자는 경남 진주소재 본사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본부, 사업단,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합격자의 역량, 희망 근무지역, 공사 인력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채용결격사유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붙임 1]에 해당사유가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항목에 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타] 선택 후 희망하는 편의지원 제공 항목 작성바랍니다. 편의지원 항목 상세 내용은 [붙임 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서류전형 평가 구성항목 및 기준

구성항목		배점	세부기준 등
어학능력		10	· TOEIC, TEPS, TOEFL iBT(TOEIC 기준 일정 점수 이상) · TOEIC-S, TEPS-S, OPIc 일정 점수 이상 ·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어학시험 일정 점수 이상 [아래 ① '어학성적 인정기준']
자 격 증 등 평 가	직무능력	40	· [사무분야] 국어능력인증 4등급, KBS한국어능력 4+급, 한국실용글쓰기 3급 이상 · [기술분야] 기술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아래 ② '기술분야 직무능력항목 계량평가 인정 자격증목록']
	IT	25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20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한국사	2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2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예시) 어학점수 미제출 시 10점의 40%(4점) 득점
-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17(목))이 유효기간 내인 국내 정기시험으로, '24.12.17(화)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다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통합채용포털)에 영어/외국어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 *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합격발표(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17(목))이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

※ 상기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면접전형 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17(목)) 전 개별 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

① 어학성적 인정기준

외국어명	어학성적 인정기준
영어	TOEIC 700점 이상, TEPS 301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TEPS-S 50점 이상, TOEIC-S IM2 이상, OPIc IM2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180점 이상 또는 新HSK 6급 18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독일어	Goethe-Zertifikat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프랑스어	DELF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러시아어	FLEX 700점 이상
일본어	JPT 70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17(목))이 유효기간 내인 국내 정기시험으로, '24.12.17(화)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다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통합채용포털)에 영어/외국어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② 기술분야 직무능력항목 계량평가 인정 자격증 목록

- 아래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시 서류전형-자격증 등 평가-직무능력 항목 40점 부여

모집직무	해당 자격증(기능사 이상)	
토목	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지적, 응용지질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지적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지적, 철도토목
건축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건설재료 시험, 콘크리트
기계	기사	건축설비, 일반기계(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건축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기능사	배관,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공유압, 기계정비), 승강기, 자동화설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무선설비, 정보통신,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무선설비, 정보통신,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기, 무선설비,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붙임3

채용 우대사항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 내역

□ 채용 우대사항

구분	대상	해당자	가 산 점 수	비 고
특별 우대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 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 점 등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중증장애 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를 추가 가산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해야함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 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 자 증명서만 인정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 민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 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일반 우대 가산점	자격증	고급자격(사무), 기술사(기술), 건축사(건축)	서류전형 면제	고급자격 :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 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필기전형 만점의 10퍼센트	
			면접전형 만점의 5퍼센트	
	수상경력	공모전 1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5퍼센트	※ 가산점 부여 공모전 - 대학생주택건축대전, 국토기술대전(舊국토개발 기술대전) ※ 수상팀당 2인까지 인정 ※ 필기전형 가산점은 작품 제출 50팀 이상 시 적용
		공모전 2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	
		공모전 3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공모전 4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청년 인턴 가산점	청년인턴 경험자	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	※ 지원한 청년인턴 채용공고 문에 고지된 가산점과 상이한 경우, 청년인턴 공고문 기준에 따르며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면제	
		성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
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 및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 *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 * 수상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하며, 우대는 3년 내 1회에 한함
- * 수상경력 가산점은 공모 시 가산점 부여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분야 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 * 서류전형 면제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적용
- * 우대사항 중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출생일 : 1991.9.29.~2008.9.28)

□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고급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

모집분야			해당 고급자격증 및 분야
사무직	행정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토목군	토목	(기술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농어업토목
	기술직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사
		기계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소방, 가스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 전기안전, 정보통신

*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6.9.28(월))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붙임4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불성실 관련 내용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블라인드 처리

① 개인 신상정보 : 기재불가

- 출신학교, 출신지, 나이, 성별,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이름, 가족관계, 재산 등

구분	위반사항	위반 예시
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	출신 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언급하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한국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저는 설계에 관한 부분을 ~ -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출신지	(기준) 출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을 빛낼 수 있는 업무가 하고 싶어 ~
	나이	(기준)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저는 ~ 29세 지원자입니다. - 제가 22세가 되던 해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자원봉사를 ~
	성별	(기준)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병장, 카투사, 의경, 병사) 등 특정 성별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위반 예시) - 카투사로 활동하며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 - (통신병, 운전병 등(간부가 아닌 병사의 보직))으로 복무하며 ~ - (훈련병, 이병, 일병, 병장)시절 훈련중에 ~ - 언니, 오빠들의 친한 동생이 될 수 있었으며 ~ - 행복주택 사업에 사촌 형이 수혜 대상이 되어 ~
	신체 조건	(기준) 신체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185cm가 넘는 큰 키를 이용하여 ~
	혼인 여부	(기준)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며 ~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교회 청년부로 활동하며, 실수를 연발해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 -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 - 사찰에 가서 스님들, 보살님들과 함께 신자님들을 돕다보니 ~
	이름	(기준) 인적사항 입력란 외에 심사위원이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입사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신입사원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 아이디어뱅크 홍길동이 되고 싶어 ~ - "친절한 길동씨"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	(기준) 가족 및 친인척의 LH 및 유관기관 재직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 - LH에 재직 중인 이모부의 말씀을 듣고 ~

② 경력 및 경험사항 : 기관명 기재 가능(부서명 및 위치 함께 기재 불가)

구분	기재사항	위반 예시
기재가능	기관명 또는 부서명	(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이나 부서명 중 1개 기재 가능 (허용 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근무를 하면서 ~ - 도로공사에서 토목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 ○○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	기관명 + 부서명	(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과 부서(지사)명을 함께 기재 할 경우 (위반 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면서 ~ - 한국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직장근무, 공모전 입상 등)

* (경험사항)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학술연구,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

□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

1. 지역인재 개념

- (정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휴학)중인(졸업예정자 제외) 자는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 4년(4년제의 경우 4년=8학기, 5년제의 경우 5년=10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를 말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함.

2. 이전지역 대학의 범위 :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1)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2)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3)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지역균형인재 상세내역

1.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 지역균형인재 : 학위과정 유형(학사, 석사, 박사)을 불문하고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음**

2. 지방대학의 판단

가. **(지방대학의 판단)**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 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본교**
-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 ※ **(25년 기준 분교) 건국대(글로벌), 고려대(세종), 동국대(MSE), 연세대(미래), 한양대(ERICA)**
 - ※ 교지분리대학(이원화 캠퍼스)은 분교와 달리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 여부를 판단

예 시

- ㉞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㉟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교지분리대학이므로 본교와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음. 본교 소재지(경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③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사관학교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 제3사관학교
-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폴리텍대학 등

- ④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한국예술종합 학교, 순복음총회신학대)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방 소재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나. **(권역 구분)** 권역 구분 없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정

※(예) 전남 소재 공공기관이 경북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채용 건을 지역균형인재 채용으로 인정

붙임6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필기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장애	상지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 증명서(원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인 증명서(원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장애인 증명서(원본)	
시각장애	공 통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 증명서(원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 단말기 사용자)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1~2급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 단말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증명서(원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4.5급 1호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5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6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수화통역사 배치	장애인 증명서(원본)	기존 2~6급
	임신부		· 낮이조절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
	과민성 대장 ·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원본)	-

□ 면접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지체장애	상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 검토 시간 1.5배 연장
	하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면접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청각장애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시간 1.5배 연장

※ 공사 시험 특성 등에 따라 제공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